

[별표 3] <개정 2005. 9. 30>

과태료의 부과금액(제46조제3항관련)

1. 일반기준의 횡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위반일을 기준으로 한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 : 만원)

위반내용	과태료 금액		
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
1.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	100	150	200
2.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			
가. 차량, 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자	100	150	200
나. 가목 이외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자	50	75	100
3. 법 제29조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 그밖의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			
가.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자	50	100	150
나.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	20	40	60
4. 법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	100	100	100
5. 법 제2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	50	50	50
6.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한 자	50	50	50
7.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 또는 사용 을 거부?방해 또는 기피한 자	30	40	50
8. 법 제27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	10	10	10
9.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 시설을 이용한 자	10	10	10